【 15 】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년월일 : 2006. 4. .
제 출 자 : 양 주 시 장

1. 개정구분 : 부분개정

2. 개정이유

「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안」 제정으로 「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내용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
①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	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 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되고, 부위원장은 담당업무의 국장이 된다.	③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.
④위원은 위원장 임명한다.	④(삭제)
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, 자연·인적재난을 담당하는 과의 담당주사로 한다.	⑤(삭제)
제11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기금의 운용계획 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	제11조 삭제
제12조(위원회 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	제12조 삭제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
제13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시장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기금의 조성계획 2. 기금의 사용계획 3. 기금의 운용방법 4.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13조 삭제

관계법령 발췌서

【 지방자치법 】 - 2005. 8. 4 전부개정, 2006. 1. 1 시행

제133조 (재산 및 기금의 설치)

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제1항에서 "재산"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

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】 - 2006. 1. 1 시행

제13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
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**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**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**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**

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】 - 2006. 1. 1 시행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【 지방재정법 】 - 2005. 8. 4 전부개정, 2006. 1. 1 시행

제34조 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

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제1항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50조 (세출예산의 이월)

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

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·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3.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
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제52조 (결산상 잉여금의 처리)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·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**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.**

1.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
2.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